

ADA –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통지서

정책 및 절차

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통지서

1990 년 미국 장애인법("ADA") 표제 II 의 요구 사항에 따라, 사회복지국(DPSS)은 당국의 서비스, 프로그램, 또는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근거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.

효과적인 의사소통: 사회복지국은 요청에 따라, 언어, 청각,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,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과, 큰글자로 인쇄된 문서, 그외 정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포함하여, 그들이 사회복지국 프로그램, 서비스,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,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 적절한 보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정책 및 절차에 대한 조정: 사회복지국은 장애인들에게 당국의 모든 프로그램, 서비스, 및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조정을 다할 것입니다. 예를 들면,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 금지된 곳일지라도, 안내견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국에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.

사회복지국의 프로그램,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 기구 또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, 정책 또는 절차의 수정을 요청하는 분은, 가능한한 빨리, 그러나 일정이 잡힌 행사 이전에, 늦어도 48 시간까지는 ADA 핫라인 (844) 586-5550 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.

ADA 는 사회복지국에서 당국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,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.

장애인들이 사회복지국의 프로그램, 서비스, 활동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 사항은 ADA 핫라인 (844) 586-5550 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.

사회복지국은,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টে를 보장하는 것 같은, 보조 기구/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나 정책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특정한 개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.

고충 처리 절차

이 고충 처리 절차는 1990 년의 미국 장애인법("ADA")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확립 되었습니다. 사회복지국에 의한 서비스, 활동, 프로그램이나, 혜택 조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운티의 인사 정책은 고용 관련의 장애 차별에 대한 불만을 다룹니다.

불만 제기자는 불만인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및 문제의 장소, 날짜 및 내용과 같은, 차별을 주장하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. 불만에 대한 개인 인터뷰 또는 녹음과 같은 불만제기의 대안 수단은 요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.

불만 제기인 및/또는 그/그녀의 대리인이 가능하면 빨리, 늦어도 위반 주장 이후, 달력날짜로 180 일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:

Civil Rights Section
12860 Crossroads Parkway South
City of Industry, CA 91746

민권 부서에 의해 접수된 모든 서면으로 된 불만과, 최고 경영자 사무실 장애 민권부서에 올린 항소와, 두 사무소에서 받은 내용은 사회복지국에서 최소한 3 년간 보관합니다.